

2023 Vol. 6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이승현 선임연구위원 | 법학 박사, saldana@kicj.re.kr

발행일 2023년 06월 30일 발행인 하태훈 발행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요키워드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 소년원 출원생, 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보고서: 이승현 외,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재) 한국소년보호협회를 중심으로-, 2022.

연구원의 허락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 보호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소년원 출원 이후 안정된 사회정착 지원을 받지 못해 재비행에 노출되는 사례 증가. 법무부의 출원생 관리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자원 활용이 절실함.
- 현재 보호소년의 사회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민간기관인 소년보호협회의 지원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이후 협회의 인적·물적 지원도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소년법」 내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인적·물적 기준도 시행령에서 보장되어야 함.
- 소년보호협회가 민간기관으로서 사회정착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독립성, 지역사회 민간기관과의 연계, 법무부의 지원 등이 확보되어야 함.
- 사회정착 지원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출원 전 사회정착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대상 청소년에 대한 개별 맞춤형 처우계획을 마련되어야 함.

01 |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연구의 필요성

- 소년법 제1조는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청소년범죄는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호소년이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
- 소년원 등 소년보호시설을 출원한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정착에 관한 관심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출원 청소년들이 교정교육을 받은 이후 제대로 된 정착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재비행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 법무부는 소년원 출원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도를 해 왔으나, 인력과 예산의 한계에 직면해있고, 민간기관인 소년보호협회가 사후정착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사회정착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많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소년보호시설 출원 이후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보호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소년보호시설 출원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조기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의 법적 기반 및 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점검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출원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재범 억제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 운영실태

- 법무부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년원 출원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출원 청소년 관리로 인한 소년원 직원의 업무가중으로 인해, 2018년부터 의료소년원을 제외한 출원 청소년에 대하여 교사재량에 따라 임의적 사회정착 지원으로 변경함.
- 민간지원기관인 소년보호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정착 지원 시설로는 창업지원센터와 자립생활관이 있으나, 매년 입소생이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예산사업이 중단되면서 지속적인 사회정착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회정착 지원의 대표적인 민간기관인 한국소년보호협회는 20여 년이 넘는 운영경험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예산 등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사회정착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 이용경험 분석

- 자립생활관 이용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시설 입소 전 사전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에 들어오고, 주거의 안정을 위해 시설에 들어오지만 심리적 불편감으로 인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고, 엄격한 생활규정, 동거인의 괴롭힘, 폭력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시설이용 청소년들은 독립적인 생활과 사생활 보호를 원했고, 청소년 개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음.
- 종사자들은 소년원 출원생이 주된 대상이나 부모의 학대 등으로 비행노출위험이 높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사업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함. 운영방식으로는 생활규정 3회 위반시 퇴소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사후관리는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방식을 취하고 있음. 종사자들은 장기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년보호협회가 사회정착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안정적 예산 확보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외국의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 현황

- 외국은 보호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정착 지원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어 협업과 지원이 원활함.
- 미국은 2008년 「Second Chance Act」법을 마련하여 소년원생들의 사회 재진입을 목표로 연방정부-주정부-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소년범의 취업, 교육, 건강, 주택 개선을 하는 사회복귀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독일은 「Jugendgerichtsgesetz(소년법원법)」을 적용하여 소년범에게 형벌보다는 교육적 처우를 우선하고, 출소 6개월 전부터 사회정착준비를 시작하고, 보호관찰관의 협력을 받고 있음.
- 일본은 「소년법」,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 「재범방지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주거, 취업, 학업지원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공공단체에게도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령 정비

- 현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의 대상은 ‘보호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비행에 노출되었거나 노출 위험이 있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소년법」에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사회정착을 위한 안정적 조직과 인력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협회 종사자의 직종, 배치기준,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 소년보호협회 정관에서도 사회정착 지원방법을 보호소년 당사자에 대한 주거, 취업, 장학, 창업, 원호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보호소년 가정에 대한 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사후지도’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소년보호협회의 역할 정립

- 한국소년보호협회는 법무부의 해당법률에 근거하여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정착사업에 있어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고, 민간기관과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정착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
- 협회 산하 시설이 제2의 소년원이나 또다른 수용기관이 되지 않도록 보호소년의 사회정착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역할 담당해야 함.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안정적 조직과 예산 확보

- 소년보호협회 종사자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위해 종사자의 낮은 임금체계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직원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이 필요함.
- 사회정착 지원이 지속되기 위해 인건비 등이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함. 국고보조를 위한 평가시 일반청소년 보호기관과 동일한 평가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실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함.

사회정착 프로그램의 활성화

- 현재 사회정착 지원대상을 소년범에서 비행노출 가능성이 있는 위기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하고,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최소 출원 3개월 전부터 사회정착 지원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개별 맞춤형 처우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함.
- 자립생활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생활규칙의 엄격성을 해소한 개별 맞춤형 규칙 수립과 가정과 같은 분위기 형성을 위해 소규모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함. 입소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심리안정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관을 지원할 지역협의체도 구성되어야 함.

- 창업비전센터는 소년원 교육 연장기관이 아니라 장래목표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교육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직업훈련을 실행해야 하며, 민간자원과 고용공단과의 연계, 외부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서비스 자원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함.

법무부와 민간단체 협력 채널의 상시화

- 법무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년보호협회 직원의 인건비 국고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소년원 내 사회정착 전담팀을 상설화하여 출원 이전부터 보호소년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협회와 출원계획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함.
- 소년보호협회의 사회정착 지원 이후에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협회와 지역사회 민간단체와의 연계방안도 모색해야 함.